

입찰제한의 세부 기준(제9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입찰제한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입찰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찰제한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입찰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입찰제한 기준에 따른다.
- 다. 제재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당 제재조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)가에 해당하면서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한 건설·운영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.

1) 가중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
- 라) 위반행위자가 원자력발전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마)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입찰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
- 바) 원자력발전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입찰제한의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, 공여하거나	법 제18조 제1항제1호			

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				
1)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		2년	2년6개월	3년
2)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		1년	1년3개월	1년6개월
3)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		6개월	7개월	9개월
4)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		3개월	4개월	5개월
5)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		1개월	1개월	2개월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·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2호	2년	2년6개월	3년
다.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3호	2년	2년6개월	3년
라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4호	2년	2년6개월	3년
마.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에 가격, 품질, 물량,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8조제1호			
1)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		2년	2년6개월	3년
2) 담합을 주도한 자		1년	1년3개월	1년6개월
3)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,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		6개월	7개월	9개월
바.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「건설산업	법 제18조 제1항제5호			

기본법」·「전기공사업법」·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(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하도급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	및 이 영 제8조제2호			
1) 면허·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		8개월	10개월	1년
2)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		6개월	7개월	9개월
3)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		4개월	5개월	6개월
사.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힌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8조제3호	5개월	6개월	7개월